

## 01. 범죄학의 개념

범죄학(criminology)이란 범죄의 성질, 원인, 대책 등을 인류학적 또는 사회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으로, 법학, 생물학, 심리학, 사회학 등 다양한 학문과 연계되는 학제적 성격과 경험과학적인 성격을 가진 학문이다. 이러한 용어는 1885년 이탈리아 법학자이자 범죄학자인 가로팔로(R. Garofalo)에 의하여 「범죄학」이라는 저술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으며, 1887년 프랑스 인류학자인 토피나르(P. Topinard)가 범죄학이란 용어를 처음으로 만들었다. 서덜랜드(Edwin H. Sutherland)와 크레시(Donald R. Cressey)에 따르면, 범죄학은 범죄에 대한 모든 지식체계로서 범죄의 원인과 법 위반에 대해 대응하는 과정에 관한 연구를 포함한다. 즉 범죄학은 ① 법을 만들고(=법의 제정 과정), ② 법을 위반하고(=법의 위반과정), ③ 법위반에 대하여 대응하는 과정이 모두 포함된다.

이러한 범죄학의 목적은 범죄현상을 파악하여 범죄원인을 분석하고, 범죄의 예방 및 진압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또한 범죄자의 교화 및 개선,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도 범죄학의 목적에 해당한다.

## 02. 범죄학의 연구 대상

## 1) 범죄

## (1) 범죄의 개념

## ① 형식적 의미의 범죄

형식적 의미의 범죄는 주로 범죄를 법적인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으로서, ‘형벌법규에 의하여 형벌을 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형법’상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이 있는 행위가 범죄이다. 따라서 어떠한 비도덕적 행위가 매우 해롭고 비난받을지라도 ‘형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행위자에게 범죄자의 지위가 부여되지 않는다.

이러한 형식적 의미의 범죄는 시대와 국가에 따라 달리 규정되므로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하는 특성이 있다. 그리고 형식적 의미의 범죄개념은 불법한 목적을 위한 가상화폐의 거래 등과 같이 입법의 지연에 따라서 법적 허점을 야기할 수 있다.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라는 격언은 범죄와 형벌을 미리 성문의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를 의미하는데, 이는 형식적 의미의 범죄를 의미한다.

## ② 실질적 의미의 범죄

이에 반하여 **실질적 의미의 범죄**는 주로 사회적 행동규범의 위반으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행위와 모범적 행위에서 벗어나는 행위 또는 일탈행위로 ‘**사회적 유해성** 또는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실질적 의미의 범죄는 범죄개념에 더 근원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정책적 판단기준**을 제시해 준다.

실질적 의미의 범죄는 간통죄, 스토킹범죄 등과 같이 ‘**시간적 상대성**’과 마약복용, 음주행위 등과 같이 ‘**공간적 상대성**’을 갖고 있다.

## ③ 자연적 의미의 범죄

**자연적 의미의 범죄**란 살인, 강도, 강간, 절도 등과 같이 시간과 문화를 초월하여 인정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이는 형법상 금지와 무관하게 그 행위 자체로 비난을 받는 범죄행위이다. 따라서 비행(delinquency), 일탈행위(deviance)와 달리 범죄란 일반적으로 국가에 의해서 처벌 받을 수 있는 불법적 행위를 의미하지만, 상대적 개념이며 복합적 개념이므로 접근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 \* 구별 개념

## ① 비행(delinquency)

비행이란 형사법령에 금지된 행위는 아니지만 형사사법기관이 개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비행은 거의 전적으로 청소년비행(juvenile delinquency)을 지칭하므로, 청소년 음주, 결석, 가출 등과 같이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지위비행(status offense)을 포함한다.

## ② 일탈행위(deviance)

일탈행위란 다양한 비공식 사회규범을 위반한 행위로서 범죄나 비행을 포함하여 불효, 불성실 등과 같은 다양한 행위를 포괄한다. 따라서 어떠한 행위는 일탈행위이지만 합법적일 수도 있고, 어떠한 행위는 범죄로 처벌되지만 일탈행위로 여겨지지 않을 수 있다. 즉 모든 범죄가 일탈행위인 것은 아니며, 모든 일탈행위가 범죄인 것도 아니다.<sup>1)</sup>

1) 대한범죄학회, 범죄학개론, 박영사, 2022, p.12-13; 임창호·라광현, 최신 범죄학·형사정책(제2판), 도서출판 자운, 2024, p.11-14; 황성현·이창한·이완희·이강훈·정재훈·이승현, 한국 범죄학, 동국대학교 출판부, 2022, p.4-6 참조

**참고** 범죄 정의의 상대성과 유동성

- ① 국가마다 법률에 정한 금지와 의무의 내용이 다르다.
- ②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모호가 경우가 있다.
- ③ 법률에 정한 구성요건이 시대의 발전에 따라 변화한다.
- ④ 사회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많이 발생한다.
- 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급한 상황에서 당연히 취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 ⑥ 범법행위를 저질렀더라도 행위자의 연령이나 신체조건 등에 따라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거나 책임을 감면해 주는 경우도 있다.
- ⑦ 동일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시간적, 공간적, 상황적 여건에 따라 범죄가 되기도 하고 단지 도덕적 혹은 윤리적 비난을 받는데 그치거나 문제조차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sup>2)</sup>

(2) 범죄에 대한 관점<sup>3)</sup>

<b>의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무엇이 범죄이며, 범죄이어야 하는가?’라는 범죄를 바라보는 시각은 범죄의 원인과 통제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고 학자들의 연구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다.</li> <li>② 어느 하나의 관점만으로는 범죄의 모든 유형과 범죄행위의 역동성을 적절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범죄의 분석과 설명을 위해서 합이론적 관점, 갈등론적 관점, 상호작용론적 관점 모두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li> </ul>
<b>합이론적 관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사회는 수많은 개인으로 구성된 하나의 유기체로서 개인들이 하나의 사회 내에서 질서를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합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이다.</li> <li>② <b>법률은</b> 사회구성원들이 공유하는 <b>가치관</b>이나 <b>규범</b>을 <b>종합</b>하여 만들어진 것으로서, 법률의 성립과 존속은 일정한 가치나 규범의 공유를 상징한다. 따라서 형법은 <b>사회구성원 대다수의 의견을 반영</b>하고, 계급이나 집단에 관계없이 구성원 모두에게 <b>평등하게 적용</b>된다.</li> <li>③ 범죄는 사회구성원 대다수에게 <b>바람직하지 않은 행동</b>으로 여겨진다. 즉,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사회구성원 대다수의 <b>합의를 깨는</b> 것으로서 <b>비난의 대상</b>이 된다.</li> <li>④ 합이론적 관점은 법의 기원을 사회적 합의에서 찾는 입장으로 사회학의 ‘<b>구조기능주의</b>’에 바탕을 두고 있다. 구조기능론적 관점은 사회의 다양한 부분들이 하나의 통합된 구조로 조직되고, 어느 한 부분이나 제도의 변화가 다른 부분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따라서 완벽하게 통합된 문화에서는 사회적 안정성이 존재하고, 구성원들이 규범, 목표, 규칙 그리고 가치에 대해서 일종의 합의나 동의를 이루게 된다. 즉, 그 사회의 법률은 일반적으로 합의된 행위규범을 반영하는 것이다.</li> <li>⑤ 사회학습이론, 사회통제이론 등 대부분의 범죄학이론은 이러한 관점을 취하고 있다.</li> </ul>

2) 황성현·이창한·이완희·이강훈·정재훈·이승현, 한국 범죄학, 동국대학교 출판부, 2022, p.6-7

3) 대한범죄학회, 범죄학개론, 박영사, 2022, p.19-21; 임창호·라광현, 최신 범죄학·형사정책(제2판), 도서출판 자운, 2024, p.15-16 참조

<b>갈등론적 관점</b>	<p>① 사회는 가치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집단 간의 갈등을 통하여 유지· 존속된다고 보는 입장으로 사회에는 자원이 모든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풍족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b>희소한 자원을</b> 소유하기 위한 <b>집단 간의 갈등</b>은 모든 사회에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p> <p>② <b>법률은</b> 사회구성원 다수의 가치를 반영하고 공익을 대변하기보다 <b>지배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b> 도구로 본다. 즉, 법률은 권력과 높은 지위를 차지한 집단의 이익과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립· 운용 된다.</p> <p>③ 범죄는 사회구성원 다수가 동의한 것이 아니라 <b>힘 있는 집단이 만든 하나의 정의</b>에 불과하다. 즉, 사회의 힘 있는 일부가 힘없는 다수를 강제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범죄를 이해하고 있다.</p> <p>④ 이러한 관점에 의하면, 형법을 비롯한 법의 집행은 계급이나 집단에 따라서 공정하지 않으며, 지배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가능하다.</p> <p>⑤ 진정한 범죄는 살인, 폭행, 강간, 강도 등과 같은 <b>거리범죄(=전통적 범죄)</b>가 아니라 노동착취, 환경오염, 가격담합, 폭력적 경찰활동, 화이트칼라범죄 등이며, 범죄대책은 이러한 진정한 범죄를 감소·근절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p>
<b>상호작용론적 관점</b>	<p>① 인간은 상징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범죄적 또는 비범죄적 행위를 학습하며, 범죄자는 다른 범죄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범죄세계에 사회화된다. 즉, 범죄자는 사회적 규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의하여 일탈자로 낙인찍힌 사람이다.</p> <p>② 다른 관점과의 차이</p> <p>㉠ <b>합의론적 관점과의 차이</b> 합의론적 관점과 같이 사회구성원 대다수의 합의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리더인 종교지도자 또는 형사사법기관의 주장과 같은 <b>도덕적 십자군·기업가(moral crusader/entrepreneur)</b>의 판단에 의하여 범죄가 만들어진다.</p> <p>㉡ <b>갈등론적 관점과의 차이</b> 범죄의 정의 과정을 자본주의적 또는 정치경제적 동기와는 연결하지 않는다.</p> <p>㉢ <b>미시적 관점</b> 합의론적 관점과 갈등론적 관점은 사회의 조직, 제도, 구조에 중점을 두는 거시적 관점에 해당하지만, 상호작용론적 관점은 일상적 상호작용에 관련된 개인의 관점에서 인간의 행위 및 사회적 생활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미시적 관점에 해당한다.</p> <p>③ 범죄는 그 자체로 악하거나 반도덕적인 행동이 아니라 사회가 낙인찍거나 정의한 행동이다.</p> <p>④ 이러한 관점에서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낙인을 덜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범죄대책은 범죄의 목록을 줄이고(=비범죄화), 더 적은 사람들이 형사사법기관을 거치게 하고, 지역사회에 더 많은 범죄자들을 처우(=탈사실화, 다이버전)하는 것이다.</p>

## 2) 범죄자

### (1) 범죄자의 개념

범죄학에서 말하는 범죄자는 「형법」을 위반한 사람뿐만 아니라 비행자, 일탈행위자, 그리고 범죄적 경향을 가진 반사회적 인격의 소유자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범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하여 범죄자의 특성, 행태 등에 관한 연구도 범죄학의 대상이 된다.

(2) 범죄자 분류

범죄자를 과학적으로 분류하는 것은 범죄원인을 규명하는 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범죄자 개인에 맞는 효과적인 재사회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여러 학자의 범죄자 분류는 다음과 같다.<sup>4)</sup>

(가) 범죄의 원인 및 동기에 따른 분류

<p><b>롬브로조</b> (C. Lombros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생래적 범죄자 : 격세 유전적 특성을 가진 선천적 범죄자</li> <li>② 정신이상 범죄자 : 간질, 정신박약 등 정신이상으로 인한 범죄자</li> <li>③ 걱정 범죄자 : 분노, 모욕 등으로 인한 우발적 범죄자</li> <li>④ 기회 범죄자 : 타고난 범죄성이 있더라도 주로 기회에 의한 범죄자</li> <li>⑤ 상습 범죄자 : 나쁜 환경으로 인한 상습적 범죄자</li> <li>⑥ 잠재적 범죄자 : 평소에는 범죄적 소질을 드러내지 않지만, 음주 등의 이유로 격한 감정에 의한 범죄자</li> <li>✓ 기회 범죄자의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자발적 범죄자 : 사람, 명예, 가족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범죄를 범하는 경우로 사회에 두려움을 야기하지 않으며 도덕적 감정을 해치지 않는 범죄자</li> <li>㉡ 준생래적 범죄자 : 환경의 촉발요인 또는 범죄 기회에 의하여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범죄자로 생래적 범죄자와 종류가 아닌 정도가 다른 경우</li> <li>㉢ 습관적 범죄자 : 일반 범죄자에 가장 가까운 경우로 범죄성을 타고나지는 않았지만, 어린 나이에 부모, 학교, 지역으로부터 받는 부실한 교육 및 훈련이 이들을 계속 해악을 범하도록 만드는 경향에 빠진 범죄자</li> </ul> </li> </ul>
<p><b>페리</b> (E. Ferr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류 기준 : 범죄사회학적 범죄요인 반영</li> <li>① 생래적 범죄자 : 유형을 통한 무기격리 / 사형 반대</li> <li>② 정신이상 범죄자 : 정신병원 수용</li> <li>③ 걱정 범죄자 : 손해배상, 강제 이주</li> <li>④ 기회 범죄자 : 중범죄-농장, 교도소 등 훈련치료 / 경범죄-손해배상, 강제 이주</li> <li>⑤ 상습 범죄자 : 개선 가능-훈련 / 개선 불가능-무기격리</li> <li>✓ 추후 '비자발적 범죄자' 추가</li> </ul>
<p><b>가로팔로</b> (R. Garofal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자연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인의 재산을 존중하거나 타인에게 고통을 가하지 않으려는 기본적 도덕의식을 위반한 범죄, 즉 '연민'과 '정직성'이라는 사회의 근본적 감정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범죄자</li> <li>㉡ 죄종에 따른 구분 : 모살 범죄자, 폭력 범죄자, 재산 범죄자, 풍속 범죄자</li> </ul> </li> <li>② 법정범 : 자연범 이외에 실정법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한 범죄자</li> </ul>

4) 이창한·황성현·김상원, 범죄학&형사정책, 박영사, 2012, p.15-16; 임창호·라광현, 최신 범죄학·형사정책(제2판), 도서출판 자운, 2024, p.17-20; 신호진, 범죄학요론, 문형사, 2024, p.34-39 참조

<p><b>아샤펜부르크</b> (G. Aschaffenburg)</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류 기준 :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결합하여 범죄자로부터 생기는 법적 위험성 기준</li> <li>① 우발 범죄자 : 과실범에 속하는 부주의한 범죄자 / 사회방위조치 필요</li> <li>② 걱정 범죄자 : 순간적인 걱정에 의한 범죄자 / 타인을 해할 의도는 적지만 위험성이 있으므로 일정한 조치 필요</li> <li>③ 기회 범죄자 : 우연한 기회에 범행을 저지르는 범죄자 / 사려부족, 성격결함</li> <li>④ 예모 범죄자 : 범행기회를 노리는 범죄자 / 공중에 대한 중대한 위험요소</li> <li>⑤ 누범자 : 유사한 동기에 의해 범행을 반복하는 범죄자 / 법률상 누범과 다르므로 전과 유무는 불문함</li> <li>⑥ 관습 범죄자 : 성격과 환경적 요인으로 범죄가 몸에 밴 범죄자 / 개선곤란</li> <li>⑦ 직업 범죄자 : 범죄를 직업으로 생각하며 적극적인 범죄욕구를 가진 범죄자 / 개선불가</li> </ul>
<p><b>그를레</b> (H. Gruhl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류 기준 : 범죄 동기를 심리학적으로 분석</li> <li>① 경향 범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능동적 범죄자 : 대부분의 직업적 범죄자에 속하는 범죄자</li> <li>㉡ 수동적 범죄자 : 범죄행위를 거부하지 않으면서도 자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범죄자</li> </ul> </li> <li>② 박약 범죄자 : 성매매여성, 정신박약자 등 의지나 신체가 박약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자로서 대부분 누범에 속하는 범죄자</li> <li>③ 걱정 범죄자 : 순간적인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자로서 대부분 명정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범죄자</li> <li>④ 명예·확신 범죄자 : 정치적 소신이나 사상에 따라 범행을 저지르는 자</li> <li>⑤ 빈곤 범죄자 : 빈곤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자로서 대부분 기회범의 특징을 가지는 범죄자</li> </ul>
<p><b>리스트</b> (F. von Listz)</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법익침해 의식이 결여되었거나 희박한 범죄자</li> <li>② 타인에 대한 동정으로 인한 범죄자</li> <li>③ 긴급범죄자</li> <li>④ 성욕범죄자</li> <li>⑤ 걱정범죄자</li> <li>⑥ 명예심이나 지배욕에 의한 범죄자</li> <li>⑦ 특정 이념으로 인한 사상범죄자</li> <li>⑧ 이욕, 쾌락욕에 의한 범죄자</li> </ul>

(나) 형사제재 및 처우방향에 따른 분류

<p><b>마이호퍼</b> (W. Maihof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류 기준 : 재사회화 이념</li> <li>① 속죄의 용의가 있는 기회범 : 사회봉사활동 등 속죄할 기회 부여</li> <li>② 속죄의 용의가 없는 기회범 : 형벌을 부과하되 격리를 통한 비사회화 또는 반사회화 될 가능성이 있는 자유형은 배제</li> <li>③ 개선 가능한 상태범 : 치료 효과가 있는 교육형 부과, 단순한 자유형보다 사회 내 처우로 재사회화 조치</li> <li>④ 개선 불가능한 상태범 :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안형 부과</li> </ul>
<p><b>국제 형사학협회</b> (IKV)</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류 기준 : 리스트의 분류를 토대로 개선가능성 정도</li> <li>① 기회 범죄자 : 개선이 가능한 범죄자</li> <li>② 사회생활능력이 약화된 범죄자 : 개선이 곤란한 범죄자</li> <li>③ 합법적 사회생활을 기대할 수 없는 범죄자 : 개선이 불가능한 범죄자</li> </ul>

(다) 범죄자의 특성에 따른 분류

<p><b>젤리히</b> (E. Seelig)</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류 기준 : 범죄자의 인격적 특성과 행동양식 종합</li> <li>① 노동을 싫어하는 직업적 범죄자 : 일을 싫어하며 절도 등을 하며 부랑 생활을 하는 범죄자</li> <li>② 저항력이 약한 재산 범죄자 :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부족하여 종종 재산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li> <li>③ 공격성이 있는 폭력 범죄자 : 흥분, 긴장 등으로 사소한 자극에도 돌발적인 공격행위를 하는 범죄자</li> <li>④ 성적 억제력이 없는 범죄자 : 성도착증 등 병적 증세로 인하여 억제력을 잃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li> <li>⑤ 위기 범죄자 : 위기상황, 즉 소질, 환경에 의한 갈등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li> <li>⑥ 원시적 반응의 범죄자 : 자기 통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쉽게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li> <li>⑦ 확신 범죄자 : 자신의 양심이나 확신에 의해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li> <li>⑧ 사회적 훈련이 부족한 범죄자 : 교통범죄, 경제범죄, 의료과실 등 국가가 요구하는 행위규범에 대한 적응력이 부족하거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li> </ul>
<p><b>헤위트</b> (Hewitt) <b>젠킨스</b> (Jenkin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류 기준 :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원인</li> <li>① 사회화가 되지 않은 공격적 성향의 범죄자</li> <li>② 사회화가 된 범죄자</li> <li>③ 지나치게 억압된 범죄자</li> </ul>
<p><b>콰이</b> (Qua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류 기준 : 범죄자의 성격</li> <li>① 사회화 결핍과 정서적 감응결핍에 의한 범죄자</li> <li>② 죄책감, 불안감을 수반한 적대 행동을 하는 범죄자</li> <li>③ 하위문화를 통해 발생하는 성격장애로 인한 범죄자</li> <li>④ 통상의 미성숙 상태로 인한 범죄자</li> <li>✓ 헤위트와 젠킨스의 분류가 같은 집단 내에서도 중복되는 경우가 존재한다고 비판하면서 다소 치밀한 분류를 시도하였지만, 오히려 범죄자와 비범죄자를 구별하는 경계선이 분명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li> </ul>

(라) 다원적 분류

<p><b>엑스너</b> (F. Exn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유전생물학적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류 기준 : 개인의 인격연구의 성과를 토대로 범죄자의 성격 형성</li> <li>㉠ 내인성 범죄자 : 유전적 소질의 영향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li> <li>㉡ 외인성 범죄자 : 환경의 영향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li> </ul> </li> <li>② 체질학적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류 기준 : 크레취머(E. Kretschmer)의 체형분류방식</li> <li>㉠ 운동형 : 근육과 골격이 잘 발달한 체형으로 잔혹한 공격성과 격렬한 폭력성을 보이는 범죄자</li> <li>㉡ 세장형 : 몸이 가늘고 흉곽도 좁은 체형으로 배려심과 지성이 부족하며 조심성이 많은 성격을 가진 범죄자</li> <li>㉢ 비만형 : 넓은 얼굴과 짧은 목을 가진 체형으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지만 기회적, 우발적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li> <li>㉣ 혼합형 : 주로 풍속범죄나 질서위반범죄를 저지르고 때로는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li> </ul> </li> </ul>
----------------------------------	---

